

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 신청서 첨부 자료 해설

- ◇ 첨부파일은 기업 선정심사 자료로 활용되므로 미제출 시 선정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□ 첨부1-1.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(둘 중 하나)

○ 사업자등록증명원

- 정부24 > 민원서비스 > 사업자등록증명 발급(<http://www.gov.kr>)
발급문의 : 1588-2188(정부24 콜센터)

□ 첨부1-2. 중소·중견기업 증명서(대기업 및 단체 불요)

○ 다음 중 해당 서류를 제출

- (중소기업) 중기업, 소기업,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
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및 발급(<https://sminfo.mss.go.kr>)
확인서 발급문의 : 국번없이 1357(중소기업통합콜센터)
- (중견기업) 중견기업확인서
중견기업정보마당에서 확인 및 발급(<https://www.hpe.or.kr/PGUM0001.do>)
확인서 발급문의 : 02-3275-2994(한국중견기업연합회)

○ 제출 시 반드시 유효기간 이내인 서류 제출

□ 첨부1-3. 대상제품 관련 자료

○ 협의체의 분석제품과 관련된 개별 기업의 제품 관련 자료 제출 (협의체 공동대응 필요성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됨)

- 지원기업이 영위하는 대상제품 관련 브로셔 및 기타 사진자료
- 대상제품명이 기재된 납품·공급계약서
- 시제품만 존재하는 경우 도면, 설계서 또는 특허출원 서류

○ 기업 홈페이지 캡처본 등 기업 브랜드 확인 가능 자료

□ 첨부1-4. 지식재산 보유현황 확인서

- 국내외에 출원 및 등록된 특허·실용신안·디자인·상표권에 대해 신청서 내 첨부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후 기업 직인 날인 후하여 제출

□ 첨부1-5. 분쟁유형별 증명서류

- 세부과제 유형을 증빙할 수 있는 분쟁 관련 증빙자료 제출
 - 협의체내 참여기업이 수령한 경고장, 라이선스 계약서 또는 소장 등 (기업비밀 모자이크 또는 삭제)
 - 대상제품 관련 수출국가 공통 증명서류(해외 납품·공급계약서, 발주서 등)
 - 기타 대상제품 관련 제3자 분쟁 증거자료
 - 상표 무단선점 현황자료(상표국 홈페이지 캡처본 등)

□ 첨부1-6. 수출국가확인서(해당시 제출)

- 다음 중 하나의 기관에서 '수출국가명'이 표시되도록 발급(최대5개국)
 - 한국무역협회: <http://webdocu.kita.net/> (무역협회 회원사만 가능)
 - 한국관세무역개발원: <https://www.bandtrass.or.kr/>
- 최근 5년(15년~19년) 중 해당 실적 년도 제출
 - 신청기업의 수출국가수에 따라 분쟁위험 노출도 평가점수가 산정됨
 - 국가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1개국 수출로 산정

※ [참고] 분쟁위험 노출도 평가 기준표

| 구분 | 항목 | 배점 | 현황별 점수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| | | 10 | 8 | 6 |
| 기본 항목 | 기업규모 | 10 | 중소기업 (개인사업자포함) | 중견기업 | 대기업 |
| | 대상제품(서비스) 관련 지재권 보유수 | 10 | 기본점수 6점(시제품) + 국내외 출원·등록 건수 × 2점 (1건 등록된 경우 출원1, 등록1로서 4점) - 국제 협약 출원은 출원 1건으로 간주, PCT국내단계 진입은 진입 국가별로 1건씩 산정, EP출원·진입·등록은 각각 출원·진입·등록 1건으로 간주 | | |
| | 신청기업 전체 수출국가 | 10 | 5개국 이상 | 1~4개국 또는 간접수출 ¹⁾ | 예정 |

1) 간접수출 : 타기업이 신청기업 대상제품을 납품받아 대상제품을 포함한 제품 수출시